

양산시 공고 제2024-3211호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신청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지원(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2. 총사업비: 336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접수기간: 2024. 12. 10. ~ 예산 소진 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4. 접수방법: 배출업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5층 기후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5.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6. 사물인터넷(IoT) 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신청일 기준 영남권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협력업체)**로 한국환경공단(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 <https://www.greenlink.or.kr/> → IoT → 업체소개 → IoT 설치업체(협력업체) → “리스트 현황(24.10.25.기준)-영남권” 참고

7.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한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한도 4백만원(자부담 포함 금액), 계측기 기준으로 산정]

※ 모든 계측기 포함하여 4백만원 초과 시 보조금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닌 계측기 수량 제외할 것

ex) 설치비 420만원인 경우, 전류계 계측기(30만원) 1개를 제외하여 400만원 이하(390만원, 자부담 포함금)으로 신청

(지원제외)

① 2020 ~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IoT 포함) 수혜 사업장

②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025. 1월 중 개별 통지**

※ 예산의 150%까지 보조사업자(예비보조사업자 포함) 선정 예정

※ 선정 업체에게 유선 안내 및 공문 발송 예정

7. 기타

가.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양산시 결정에 따른다.

나. 제출서류는 공고문의 첨부서류와 작성안내(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예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완 및 반려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후환경과 환경지도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동부양산)	055-392-2632	dabyoun@korea.kr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서부양산)	055-392-2634	leeje14@korea.kr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

□ (지원제외)

- ① 2020 ~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 포함) 수혜 사업장
- ②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신청일 기준 영남권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협력업체)**로 한국환경공단(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 <https://www.greenlink.or.kr/> → IoT → 업체소개 → IoT 설치업체(협력업체) → “리스트 현황(24.10.25.기준-영남권)” 참고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 비용의 90%) 추가 지원]
-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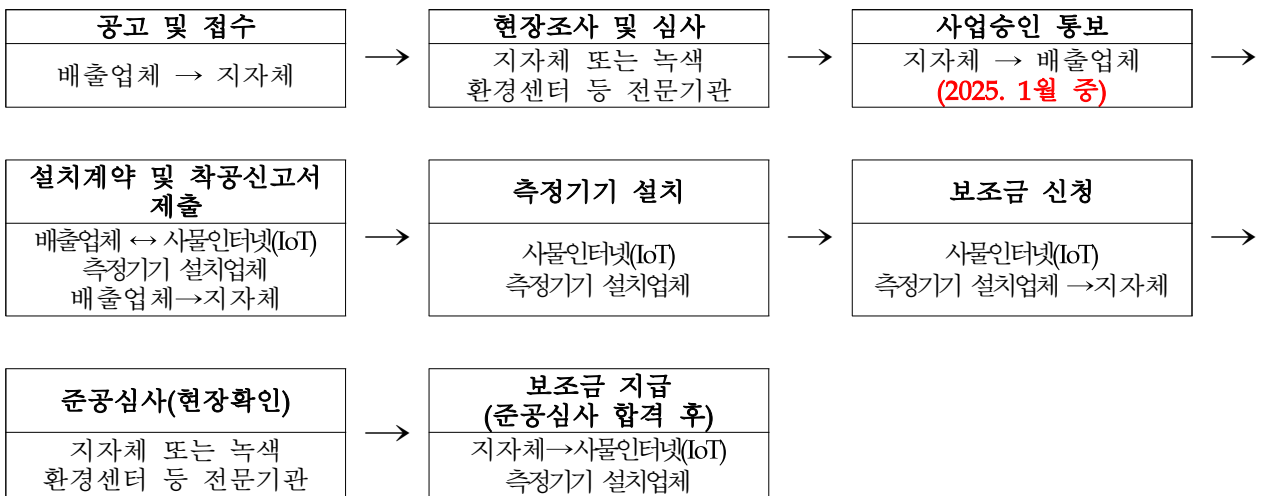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³⁾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기간별 보조금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
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사후관리 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2.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 ①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p7 구비서류 참고)
- ②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③ (사업승인)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제출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⑤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 IoT 게이트웨이 Display는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을 그린링크에 등록된 시설 종류대로 표식하여야 함. (ex. 배출(1), 배출(2), 송풍(1) 등)

⑥ (준공심사 및 보조금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 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최초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구비서류 목록>

- | | |
|---|--------|
|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 1) |
|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 ③ 사업장 위치도 1부 | (서식 2) |
| ④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 (서식 3) |
| 가. 사업장 시설 배치도(배출, 방지시설 위치 표기) | |
| 나.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설치 견적서 | |
| 다. 공인시험기간(KOLAS)의 성적서 및 KS규격품 인증서 | |
| 라. VPN CC인증서 | |
| ⑤ 사업자 등록증(신청업체, 설치업체) 사본 각 1부 | |
|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4) |
|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 |
|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 |
| 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 5) |
| ⑪ 위임장(해당 시) 1부 | (서식 6) |
| ⑫ 보조금 반납 협약서(배출업체) 1부 | (서식 7) |
| ⑬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 (서식 8) |
|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 (서식 9) |

※ ⑤, ⑦, ⑧, ⑩, ⑪, ⑫, ⑬, ⑭ 서류 최초 신청 시 제출

3. 보조금 환수 및 사후관리

□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준공도서 등 제출된 서류(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사물인터넷(IoT)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사후관리) 사물인터넷(IoT) 운영상황 정기적 조사 등 관리실태 확인

-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3년간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 (반기 1회 이상)

【서식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담 당 자		(이메일주소/연락처:)			
시공업체	상 호					
	담 당 자		(이메일주소/연락처:)			
사업장 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대상	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착 공 예정일	20 년 월		준 공 예정일	20 년 월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p>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배출업체 업체명 (서명 또는 인)</p> <p>양산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배출업체, 시공업체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필수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 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 위임장(해당 시) 1부. 12. 보조금 반납 협약서(배출업체) 1부. 13.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서식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치대상	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³)*2, 탈사(15m³)*2, 흡수에의한시설(300 m³)*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양산시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4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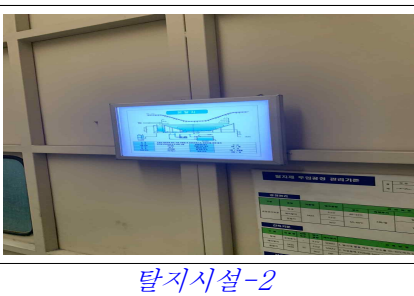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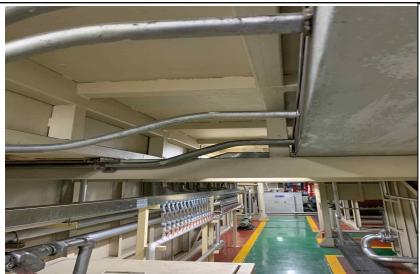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흡수에의한시설(250) GATE WAY 설치 위치	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메인 제어판넬 설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	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	탈지시설-2
		
화성처리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7】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8】

이행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z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z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z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양산시장 귀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10】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div>			
양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서식 12】

등록번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보인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③주소	(전화번호:)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업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p>「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양산시청 귀하</p>										
<p>※ 구비서류 :</p> <p>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p> <p>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p> <p>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p>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수료	없 음
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펜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펜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진류계), 방지시설(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³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CC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정상/비 정상	
방지1	차압계	1							정상/비 정상	
방지2	pH계	1							정상/비 정상	
송풍2	전류계	1							정상/비 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